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64
----------	-----

2021. 7. 20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13일

-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용식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도정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해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조정 등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문단 구성 인원 및 임기 변경(안 제3조)

- 인원: 200명 이내 → 250명 이내
- 임기: 2년 → 2년 이내
- 분과위원회 설치 변경(안 제6조)
 - 신설: 자치경찰분과위원회, 신성장분과위원회
 - 통합: 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+복지분과위원회=복지·여성분과위원회
 - 분리: 공공혁신분과위원회→공공혁신분과위원회, 재난·소방분과위원회
- 조례의 유효기한 연장(안 제11조)
 - 2021년 12월 31일까지 → 2026년 7월 31일까지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민·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2011년 설치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와 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.
- 이는, 도 행정기구 개편 등 도정 여건 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한 개정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 및 의견

- 안 제3조는 자문단의 총 위원수를 현행 “200명” 에서 “250명” 으로 확대하고, 위원 임기를 현행 “2년” 에서 “2년 이내” 로 개정하려는 것임.
- 위원수의 확대는 안 제6조에서 분과위원회를 현행 9개 분과에서 11개 분과로 늘림에 따른 조치로 보여짐.

- 위원 임기 규정과 관련해서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2제2항에 “자문기관의 위원은~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어, “2년 이내” 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님.
 - 단, 임기를 “2년 이내” 로 정할 경우, 도지사가 위촉 당시 위원 임기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위촉 대상 도민의 입장에서 는 위촉 기간의 불명확성을 야기할 수 있음.
 - 이에, 충북도와 유사한 도지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를 제정한 충남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등 타 시·도에서도 위원의 임기를 2년 으로 규정하고 있음.
 - 다만, “2년 이내” 로의 개정이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며, 도정 정책자 문단은 법령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, 그 기능이 도지사의 필요에 따른 정책 자문을 전담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임기(보 궐 포함)에 맞춘 운영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.
 - 그러나 위촉 기간의 불명확성을 야기하면서까지 위원 임기를 “2년 이 내” 로 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필요함.
- 안 제6조는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중, “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” 와 “복지분과위원회” 를 “복지·여성분과위원회” 로 통합하고, “자치경 찰분과위원회”, “신성장분과위원회”, “재난·소방분과위원회” 를 신 설하는 것으로,
- 이는 도 행정기구 개편 및 도정 여건 변화에 따라 원활한 자문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안 제11조는 본 조례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, 이는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안 부칙 제3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, 제6조제1항제3호의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에 한하여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21년 10월17일까지로 정하고 있음.
 - 이는 기존 도정 정책자문단의 임기가 2021년 10월17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며,
 - 다만,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가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 외에도 “신성장분과위원회”, “재난·소방분과위원회”가 있는데,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만 특례 규정을 통해 조례 시행 즉시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.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의 정책 자문을 위한 도정 정책자문단의 위원수 확대, 분과위원회 조정 및 추가 신설, 자문단의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, 도정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법적, 절차적으로도 문제는 없음.
 - 다만, 앞서 제시한 제3조제3항의 위원 임기 및 부칙 제3조의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7. 13. 이상욱 의원

나. 수정이유

○ 내용상 중복으로 불필요한 부칙 조문을 삭제함

다. 수정 주요내용

○ 부칙 제3조를 삭제함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및 조문 대비표

○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」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: 2021년 7월 13일

제안자: 이상욱 의원 등

가. 수정이유

- 조례안 제3조3항과 내용상 중복되어 불필요한 부칙 조문을 삭제함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부칙 제3조를 삭제함.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209 427 300 465">부 칙</p> <p data-bbox="172 546 783 824">제3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를 2021년 10월 17일까지로 하되,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.</p>	<p data-bbox="810 427 901 465">부 칙</p> <p data-bbox="810 546 1358 645">제3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) 〈삭 제〉</p>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0명” 을 “250명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2년으로” 를 “2년 이내로” 한다.

제6조제1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공혁신분과위원회
2. 재난·소방분과위원회
3. 자치경찰분과위원회
4. 복지·여성분과위원회
5. 경제분과위원회
6. 신성장분과위원회
7. 바이오분과위원회
8. 농·어업분과위원회
9. 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
10. 균형발전분과위원회
11. 환경·산림분과위원회

제11조 중 “2021년 12월 31일까지” 를 “2026년 7월 31일까지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과위원회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 각 호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20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<u>2년</u>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·장기여행,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</u> 2. <u>공공혁신분과위원회</u> 3. <u>복지분과위원회</u> 4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 5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 6. <u>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</u> 7. <u>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 8. <u>바이오분과위원회</u> 9. <u>환경·산림분과위원회</u> 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 ----- --- <u>25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2년 이내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공공혁신분과위원회</u> 2. <u>재난·소방분과위원회</u> 3. <u>자치경찰분과위원회</u> 4. <u>복지·여성분과위원회</u> 5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 6. <u>신성장분과위원회</u> 7. <u>바이오분과위원회</u> 8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 9. <u>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</u> 10. <u>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 11. <u>환경·산림분과위원회</u>

현행	개정안
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유효기한)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하되, 필요시 연장 할 수 있다.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유효기한) ----- ----- <u>2026년 7월 31일까지</u>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“자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도정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해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조정 등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자문위원 50명 증원(200명→250명)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수요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제9조(수당)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산출근거(자문수당)
 - 2021년 : 100천원 × 50명 × 2회/년 = 10,000천원
 - 2022년 이후 : 100천원 × 50명 × 2회/년 = 10,000천원
- ※ 증원되는 자문위원(50명) 회의참여 시 1명당 자문수당 100천원 소요 예상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 시행 시 '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0,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

다. 재원조달방안: 도비 일반회계 100%

※ 정책기획관실 도정정책 자문수당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출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자문수당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
6. 작성자 : 정책기획관 신성영